

2025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선정 공고

‘여성친화도시 안양’을 위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와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안 양 시 장

①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6. 2.(월) ~ 6. 24.(화) / 23일간

② 사업목적

- 여성근로자가 경력중단 없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및 근무환경 마련 등 기업의 성평등한 기업 문화 조성의 필요성 인식·유도를 위한 지역사회 인센티브 마련

③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2025. 8. ~ 2028. 8.)

④ 신청자격

- 관내 신고된 기업체 중 기업경영 2년 이상인 기업
- 관내 소재 근로자 4인 이상 기업체 ※ **지점 및 지부의 경우 근로자 10인 이상**
- 기업체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20% 이상
-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기업
- 회사 내규 내 모·부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지침 명시 및 마련
- 그 외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업 등

⑤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이자차액보전을 0.5%p 우대
- 우수기업 선정 및 산업진흥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 사업 및 채용지원서비스 등 연계
 - ※ 일·육아 동행 플래너 사업 선정 시 우대(단, 지원 한도 범위 내)
-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

신청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그 밖에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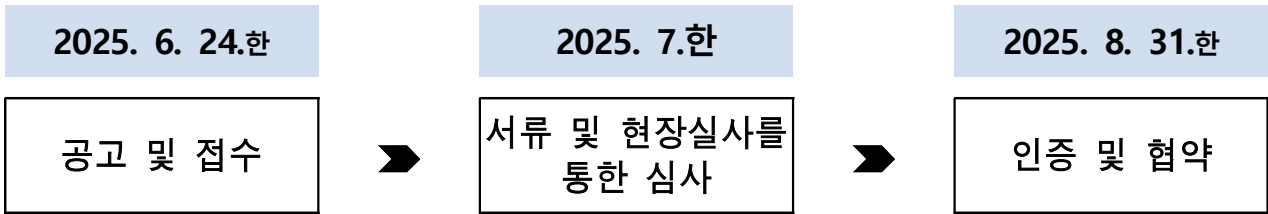
⑥ 신청절차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6. 2.(월) ~ 6. 24.(화) / 23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 주 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이메일: hongys89@korea.kr
- 제출서류: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성별 구분) 각 1부
 - ※ (해당할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⑦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여성친화인증 기업 서류 심사
 - 인증기준 접수표에 따른 여성친화기업 선정
 -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단 현장실사 결과 반영
- 선정 결과 발표 : 2025. 8월 중 예정(개별 통지)

8] 평가 및 선정 절차



9]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인증 취소
-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다음년도부터 제외
- 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 불가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8045-5892)

참 고 사 항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 (온 라 인) ① 고용노동부, ‘(사업장교육용) 매년 실시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꼬꼬무 ver)’
②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중 1개 동영상 시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참석자 서명부 및 사진 반드시 포함)
- (오프라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강사 찾기’를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

-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중 **평균 60점** 이상 기업
[필수조건 1]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중 1개
[필수조건 2] 회사 내규 내 모성보호제도 지침 마련(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필수조건 2건 미충족 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불가**

- 현장실사 추진 시 기업담당자에게 모니터링 일정 사전 안내 및 협의하여 추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 기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각 기관별 사업 지침에 따라 일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현판의 경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기업체 별도 발송